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19475
등록일자	2016.4.21.
결재일자	2016.4.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이은수	한문석	이규형	04/25 김효길		
협조자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  
**2016년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 계약 체결**

■ 위탁기관 : 강남장애인복지관

- 2016. 4. 30 강남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 재계약 체결

■ 위탁기간 : 2016. 5. 1 ~ 2018. 4. 30(2년간)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운영인력 : 기사 2명(수탁체 자율운영)

■ 사업수행 관리

- 이용실적관리 : 월별 운영비 신청시 노선별 운행실적 제출
- 운전기사 임면 및 복무관리
- 정기적 차량 내외부 청소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유지
- 차량별 차량유지비(유류대, 보험료 등) 정산관리 철저

**강 남 구**  
(사 회 복 지 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p style="color: green;">관련 규정 및 근거</p>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p>·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p>
<p style="color: green;">추진 경위</p>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p>· 추진경위 : 2000. 5월부터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 사업 추진</p>
<p style="color: green;">예산 사항</p>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p style="color: green;">수혜자 및 범위</p>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p>· 대상 : 공무원 ----, 일반주민 : ----, 특정인 : ----, 기타 : 장애인, 노약자 및 임신부 등 교통약자 및 그의 보호자</p>
<p style="color: green;">분야 별 검토사항</p> <p style="color: green;">[계속 : ]</p> <p style="color: green;">[신규 : ]</p>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p>① 관련부서 협조 ----- ( )</p> <p>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p> <p>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p> <p>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p> <p>⑤ 시장조사 ----- ( )</p> <p>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p> <p>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p> <p>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p> <p>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p>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p style="color: green;">타 기관 사례</p>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p>·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p>
<p style="color: green;">전문가 자문</p>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p>· 해당사항 없음.</p>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

# 2016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 계약 체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강남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함

※ 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계획(사회복지과-984호,2016.01.07)

## I 사업 개요

- 최초운영 : 2000. 05. 15일부터
- 현재 사업기관 : 강남장애인복지관(관장 허명환) 위탁운영
  -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05
- 이용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및 그의 보호자
- 운영실적 및 지원액(구비100%)

구 분	운영실적 (단위:명)		지 원 액 (단위:천원)		
	연간 총 이용인원	1일평균 이용인원	총 계	인건비	운영비
2008년	47,317(250일)	190	95,830	50,160	45,670
2009년	51,309(255일)	202	113,928	63,000	50,928
2010년	58,147(253일)	230	99,755	62,229	37,526
2011년	56,212(252일)	224	105,349	62,229	43,120
2012년	66,376(246일)	260	114,306	61,651	52,655
2013년	67,014(235일)	286	116,169	63,969	52,200
2014년	71,065(233일)	305	113,136	65,736	47,400
2015년	66,975(235일)	285	113,163	66,723	46,440

■ 운행차량 : 2대(초저상버스 1대, 리프트장착 중형버스 1대)

구분	차량번호	차종	사양	구입일
1호차	71조1415	대우 대형승합 (초저상 CNG버스)	일반좌석 26석 휠체어 3대 탑승	2009.06.19
2호차	71조1389	에어로타운 휠체어 장착 장애인차	일반좌석 20석 휠체어 2대 탑승	2009.02.23

■ 운행노선 : 2개 노선, 각 1일 3~4회 왕복운행(1호차 4회, 2호차 3회)

1 노 선	2 노 선
직업재활센터→수서우체국→수서역→일원1동 주민센터→대청역→하상장애인복지관→강남장 애인복지관→학여울역→대치역(구민회관)→푸 드마켓(대치점)→삼성역→봉은사→강남노인복 지관→강남구청→강남보건소→치매지원센터(강 남시니어플라자)→봉은사→삼성역→푸드마켓 →대치역→학여울→하상장애인복지관→대청역 →일원1동주민센터→수서역→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센터→세곡동사거리→리엔파크2단지→ 리엔파크4,5단지→강남NH16단지→강남NH7단 지→자곡포레→수서역→태화복지관→일원역→ 주공3,4단지→구룡마을→개포주공1단지→구룡 초사거리→강남세브란스→도곡1동사거리→역 삼역→충현복지관→차병원→강남시니어프라자 →치매지원센터→노인복지관→강남구청→강남 보건소→강남시니어플라자→차병원→충현복지 관→역삼역→강남세브란스→구룡초사거리→개 포시영아파트→구룡마을→개포주공3,4단지→ 일원역→태화복지관→수서역→세곡동사거리→ 리엔파크2단지→리엔파크4,5단지→강남NH1단 지→강남NH3단지→강남NH6단지→강남NH7단 지→자곡포레→수서역→직업재활센터

## II 위탁기간 계약체결(안)

■ 위탁기관 : 강남장애인복지관

● 2016. 4.30 강남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 재계약 체결

■ 위탁기간 : 2016. 5. 01 ~ 2018. 4. 30(2년간)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차량운행 : 기사 2명

■ 사업수행 관리

- 이용실적관리 : 분기별 운영비 신청시 노선별 운행실적 제출
- 운전기사 임면 및 복무관리(교육)
  - 차량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종사자 임면 및 복무관리
  - 운전기사 안전운행 교육실시 및 교육일지 작성
- 정기적 차량 내외부 청소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유지
- 노선변경 등에 따른 정류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 차량별 차량유지비(유류대, 보험료 등) 정산관리 철저

### ■ 위탁운영 현황

운영기간	위탁기관	비고
2000.04.21 ~ 2002.03.31	성모자애복지관(재위탁 1년)	2년
2002.04.01 ~ 2006.03.31	충현복지관(재위탁 2년)	4년
2006.04.01 ~ 2010.04.30	하상장애인복지관(재위탁 2년)	4년
2010.05.01 ~ 2014.04.30	강남구직업재활센터(재위탁 2년)	4년
2014.05.01 ~ 2016.04.30	강남장애인복지관	2년
2016.05.01 ~ 2018.04.30	강남장애인복지관	2년

## Ⅲ 행정사항

- 2016.04.28.한 위탁운영에 대한 약정체결 및 공증 추진

붙임 : 강남구장애인무료셔틀버스위탁운영에관한약정서

# 강남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강남장애인복지관(이하 "을"이라 한다)는 강남구장애인무료셔틀버스 2대(71조1389 및 71조1415, 이하 "장애인무료셔틀버스"라 한다)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장애인무료셔틀버스를 효율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관리 및 운행)** "갑"은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을"에게 장애인무료셔틀버스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한다.

**제3조(위탁운영 기간 등)** ① 위탁운영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30일 (2년)까지로 한다. 다만, "갑"또는 "을"의 요청에 의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을"은 재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탁운영기간 중 위탁약정 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이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의 위탁운영체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장애인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산관리)** ① "갑"은 "을"에게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갑"의 소유인 차량(부속물품 포함), 정류장 표지판 등에 대하여 위탁 관리하게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위탁관리 재산에 대하여 정비·수리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파손·분실시에는 "갑"에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고 발생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위탁관리 재산을 정비·수리하거나 차량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운영비)** ①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은 위탁운영 기간동안 차량보험(책임 및 종합)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장애인등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침(서울특별시)

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차량운영과 관련, 자체규정을 마련하는 등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차량의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대여, 재 위탁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선운영 이외의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정규노선운영 후 또는 공휴일에 “을”이 장애인복지 사업을 위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을”은 “갑”과 합의된 장애인무료셔틀버스 노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을”은 “갑”이 운행노선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어떠한 권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⑦ 운행노선에 설치된 정류장표지판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⑧ “을”은 차량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임면 및 복무관리하며 종사자 임면시에는 사전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책임)** ① “을”은 장애인무료셔틀버스의 정기점검 및 수리 등 안전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차량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을”은 장애인무료셔틀버스를 운영·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갑”은 ①항의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약정의 취소 등)** ① “갑”은 “을”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갑”의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지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위탁운영 약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약정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갑”에게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0조(약정서 등의 해석등)**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약정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의사·해석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효력) 이 약정서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

이 약정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5월 1 일

“갑”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장 신연희 (인)

“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05  
강남장애인복지관장 허명환 (인)